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안

검 토 보 고

1. 제안이유

○ 「지방재정법」 제77조, 동법시행령 제84조 및 「사하구공유재산관리조례」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중요 구유재산의 취득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우리구 의회의 의결을 받아 목적사업을 차질없이 집행하고자 함.

2. 주요골자

가. 감천2동 고지대 생활환경 개선사업

○ 민선4대 주요시정과제의 하나인 「Well-being」 추진 일환으로 고지대 저소득층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 지역의 균형있는 발전과 주민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해

○ 감천2동 고지대 지역에 방치된 빈집을 매입후 철거하여 쌈지공원 2개소를 조성함으로써 도로, 공원등 간설시설 없이 10여평 내외의 노후 불량주택지에 동네 마당을 제공함으로써 주변지역의 생활환경을 개선코자 함.

○ 당초 사업대상지인 제1구역 주민들이 감정평가에 의한 보상금액이 낮다는 이유로 공원조성을 반대하여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하여 새로운 사업대상지가 선정되어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사항 발생함.

나. 취득대상 재산현황

○ 사업대상지

- 변경전 제1구역 : 감천동 6-1165외 8필지

▶ 취득부지 : 감천동 6-1165외 6필지 251㎡

면 적(㎡)			건 물(동/면적㎡)			비고
계	국유지	사유지	계	빈 집	기 타	
520	269	251 (76평)	8/427 (129평)	3/147	5/280	

- 변경후 제1구역 : 감천동 6-1603외4필지

▶ 취득부지 : 감천동 6-1603외2필지 241㎡

면 적(㎡)			건 물(동/면적㎡)			비고
계	국유지	사유지	계	빈 집	기 타	
346	105	241 (73평)	3/320 (97평)	1/38	2/282	

○ 취득내역 : 보상비 - 변경전 237,453천원, 변경후 218,431천원

▷ 부지매입비

- 변경전 : 76평 × 1,500,000 = 114,000천원

- 변경후 : 73평 × 1,500,000 = 109,500천원

▷ 건물매입비

- 변경전 : 129평 × 957,000 = 123,453천원

- 변경후 : 97평 × 1,123,000 = 108,931천원

3. 관계법령

○ 지방재정법제77조 및 동법시행령제84조

○ 사하구공유재산관리조례제37조

4. 검토의견

○ 본 건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안은 2004. 10월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제출받아 승인된 사항중 일부 물건 변경이 있어 변경된 부분을 승인받으려는 것으로

○ 그 내용을 보면 고지대 생활환경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고지대에 방치된 빈집을 매입한후 쌈지공원 2개소를 조성코자 2개지구별로 국유지를 제외한 토지 및 건물을 매입코자 하였으나 당초 계획한 1지구의 토지 매입이 여의치 않아, 매입이 쉬운 타 지역으로 변경 매입하려는 것인데

○ 변경된 지역의 토지면적이 종전보다 3평 줄었으며(국유지제외) 그 금액도 건물포함 19,022천원 줄어 들었는데

○ 사하구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7조에 보면 예산편성 전에 관리계획을 의회의 승인 받는 취지가 예산 편성을 위한 사전조치로 보아야 할 것이며

○ 「지방재정법」 제77조 및 동 시행령 제84조에 의하면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될 사항이 취득가격은 1억 이하 토지면적은 1,000㎡이하이며, 의회의 의결을 이미 받은 사항은 그 가격 또는 면적이 30%이내의 증감사항 일때인데 다만 그 지번 변경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으나 그 취지가 앞서 설명한바와 같이 예산편성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보아 그 가격이 관건이라 볼 때,

○ 본 건은 지번만 다른 곳 일뿐 토지면적, 가격의 변동사항이 종전보다 30%범위 이내로 오히려 줄어든 점을 볼 때 원칙상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판단되지만

○ 엄격한 법적판단을 떠나 그 지역이 변경된 점을 감안해 볼 때 변경된 사항을 의회에서 알아 두는 것이 더 좋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이 좋다고 사료됨